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16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조지연 · 최보윤 · 김소희
박준태 · 서일준 · 우재준
김용태 · 구자근 · 김은혜
김위상 · 김정재 · 성일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u> <u>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u> <u>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u> <u>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u> <u>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u> <u>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u> <u>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u> <u>있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u> <u>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u> <u>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u> <u>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u> <u>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에</u> <u>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u> <u>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u> <u>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u> <u>스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와</u> <u>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u> <u>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u>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